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05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김정호·어기구·박 정

허종식 · 김남희 · 윤후덕

이연희 • 박희승 • 이훈기

박해철 · 신영대 · 전재수

이수진 · 임미애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위원이 직접 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위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위원의 원활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대 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103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4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1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요구
	<u>할 수 있다.</u>
2 / 2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제	③ 제1항 또는 제2항
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	
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	
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④</u>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⑤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관계인 또는 기관은 「국회에	
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고, 위원회의 검증이	
나 그 밖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